

수 신 : 의 장

제 목 :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2년 7월 13일

대표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태손 (서명 또는 날인)
발 의 의 원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김재우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김지만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만규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영애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전경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조경구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하병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허시영 (서명 또는 날인)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태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2. 7. 13.

발 의 의 원 : 이태손, 김재우,
김지만, 이만규,
이영애, 전경원,
조경구, 하병문,
허시영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민선8기 시정방향에 따라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하여 중복기능으로 인한 공공시설 운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 건전화 및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에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변경함.
- 나. 공단의 자본금, 정관, 등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 다. 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라. 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까지)
- 마. 공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부터 안 제29조까지)
- 바. 공단의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 안 제31조)
- 사. 재산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
- 아. 공무원의 파견·겸임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

자. 권한의 위탁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제36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없음.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대구공공시설공단을 설치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6,200억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당연직은 제외한다)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은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

하로 한다.

⑤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에 임원 추천을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임기 및 직무)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 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 업

제16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업
2.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사업
3.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매립장 관리 및 운영사업

4.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운영사업
 5.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6.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유지관리, 관제센터 운영
 7. 지하상가, 가로등 관리운영 및 교통관련 사업
 8.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9. 건설기계 및 차량의 관리
 10. 폭 20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11.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2. 문화·예술·관광, 체육, 도시공원 및 장사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사업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환경관련사업 및 위탁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 ②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의 범위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공단은 하수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내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중 축구장(하키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하고, 위치 및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할 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있어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구역) 공단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의뢰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4조(예산과 결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준비금으로 보전
2. 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6조(기금조성 등) ①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재정지원) 시장은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로 빌려줄 수 있다.

제28조(단기차입금 등) ① 공단은 시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제29조(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30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보고 및 검사)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2조(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33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79조를 적용하고,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환경공단 또는 대구시설공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고, 대구환경공단 및 대구시설공단의 모든 재산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승계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대구시설공단”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제3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대구환경공단”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대구시설공단”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대구시설공단이사장”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구환경공단 또는 대구시설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축구장(하키장)의 명칭 및 위치 (제17조 관련)

명 칭	위 치
북부축구장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442번지
신천축구장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290번지 4호
안심축구(하키)장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828번지 3호

(별표 2)

축구장(하키장)사용료 (제1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구분	축구(하키)경기		체육행사 등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북부·신천축구장	주 간	50,000	70,000	140,000	170,000
안심축구(하키)장	주 간	40,000	60,000	120,000	150,000
비 고	○ 안심축구(하키)장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 27,000원의 인조잔디 살수료 추가 징수				

관 계 법 령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12. 15., 2017. 7. 26.>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9. 21., 2013. 12. 4., 2016. 3. 30.>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 3. 31., 2019. 7. 9.>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 6. 12.>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12. 4.>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3. 12. 4.>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 9. 21.>

⑨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7. 31.>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 9. 21., 2012. 7. 31.>

[본조신설 2002. 6. 19.]

[제목개정 2009. 9. 21.]

[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3은 제56조의4로 이동 <2007. 3. 9.>]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1. 28.> [전문개정 2011. 3. 29.]